##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66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이용선·김민석·김정호

민형배 • 박용진 • 양향자

윤준병 • 이용빈 • 정성호

정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 신청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됨.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이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기존 실무를 개선 하여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 법원과의 실무상 차이가 발생해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게 불합 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광역시를 관할하는 지방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폭증하는 도산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과중 채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법률 제 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대전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	-------

별표 1의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기 기 거 6 日 년	91 1 8 7 7 1

별표 1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1의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광주회생법원	광주광역시
--------	-------

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회생법원	관 할 구 역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대구	대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각급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일 전날 각급 회생법원이 아닌 법 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